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363호

의 안 명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229개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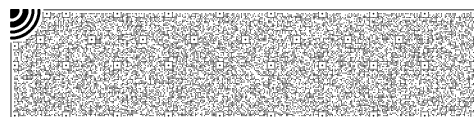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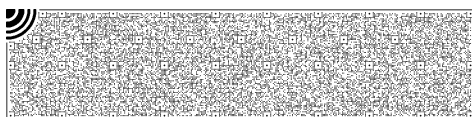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8. 24.

주 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229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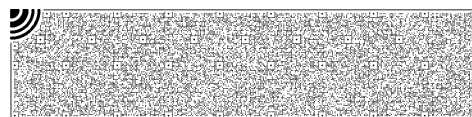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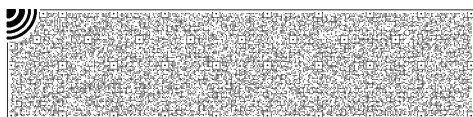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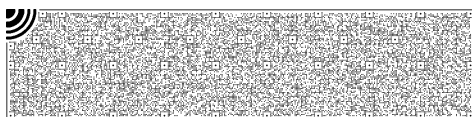
[별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 · 강화 방안

2026. 8.



국민권익위원회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일반 및 제도 현황	2
III. 현황 및 문제점	7
①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 가중	7
②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 연계 미흡에 따른 폐업신고 누락	9
③ 통합 폐업신고 진행 이력 확인 곤란	10
④ 통합 폐업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12
IV. 개선방안	14
① 통합 폐업신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	14
② 행정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 폐업신고 누락 방지	15
③ 민원인에 대한 알림 기능 대폭 확대	16
④ 인식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홍보·교육 강화	16
V. 조치사항 및 기한	17
붙임 1. 관련 법령	18
2. 통합 폐업신고 대상 민원의 종류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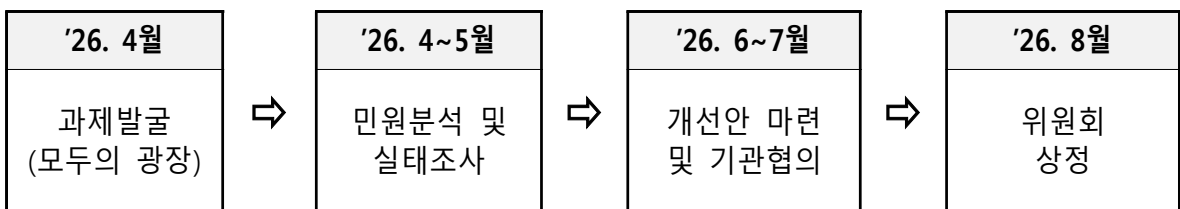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 ◆ (국정과제 14)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1.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 추진배경

-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로 인해 과도한 시간·경제적 부담 초래
 - ※ 2024년 국세청 통계 기준 연간 폐업신고 건수가 약 100만 건
- 폐업 사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및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 중
 - * '15년 34개 업종에서 시작하여 '26년 현재 56개 업종(150개 세부업종)으로 확대·시행
 - 그러나, 온라인 접근성의 한계,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미흡,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 제기
 -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에 대해 통합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통신 판매업이 유지되어 등록면허세가 납부 고지됨(110콜센터 상담, '26.1월)
- 이에,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불편·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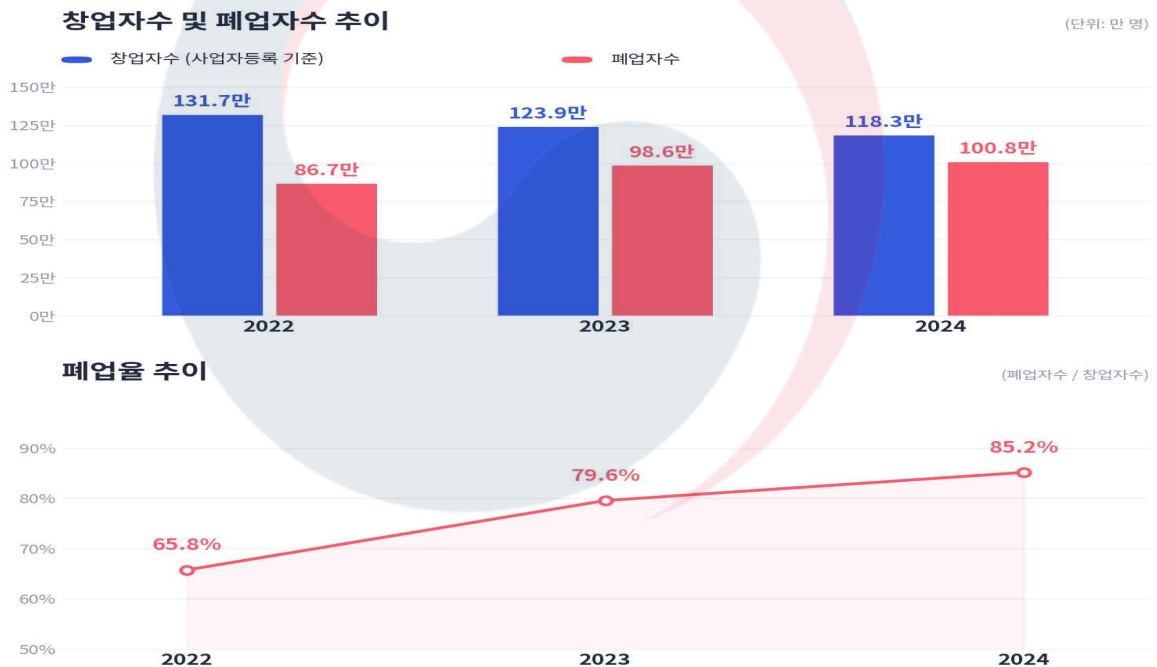
□ 추진경과



Ⅱ. 일반 및 제도 현황

□ 최근 3년간 창·폐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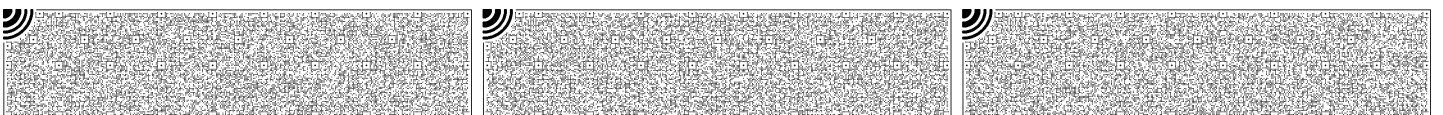
- 신규 창업자 수는 2024년 118.3만 건으로 2022년 대비 10.1% 감소 추세
※ (2022년) 131.7만 건 > (2023년) 123.9만 건 > (2024년) 118.3만 건
- 반면, 폐업자 수는 2024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긴 100.8만 건으로, 2022년 대비 16.3% 증가
※ (2022년) 86.7만 건 > (2023년) 98.6만 건 > (2024년) 100.8만 건
-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65.8%에서 2023년 79.6%, 2024년 85.2%로,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 통합 폐업신고 제도 현황

- (운영 배경)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의 하나로 폐업신고의 불편·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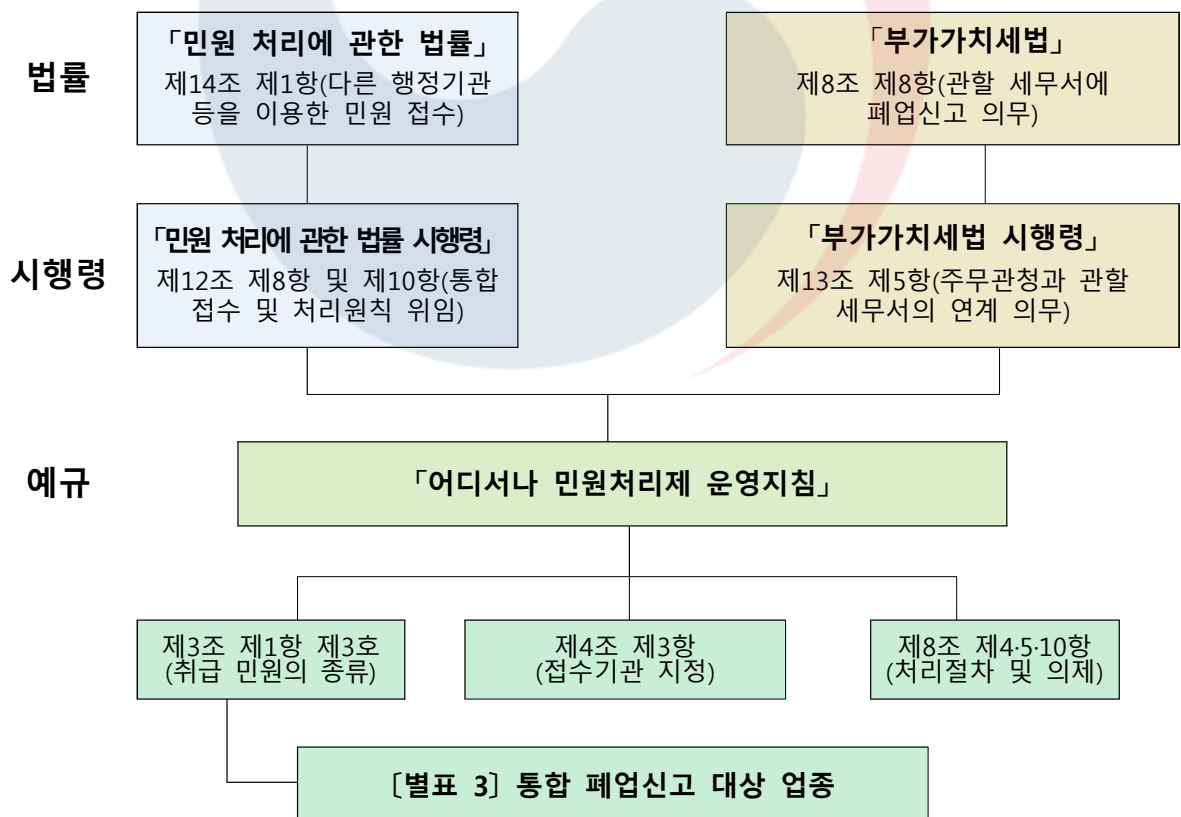


- 초기에는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담배소매업, 식품위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
 - 이후,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업종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하여, 현재는 150개 업종을 통합 폐업신고 대상으로 규정
- ※ **시·군·구 처리 폐업신고 업종 중 간소화 제외 업종** : 폐업처리 전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전환조치 등 사전심사 필요업종(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등) 및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업종(도시가스사업, 건설물폐기처리업 등은 제외)

○ **(법적 근거)** 통합 폐업신고는 관련된 두 법률(민원처리법,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하여, 각 시행령에서 절차를 정하고, 그 세부 기준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

※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법령 체계도】



<민원처리법령>

- **법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⑧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령>

- **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⑤ ~ <생략>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접수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
 2. 관할 세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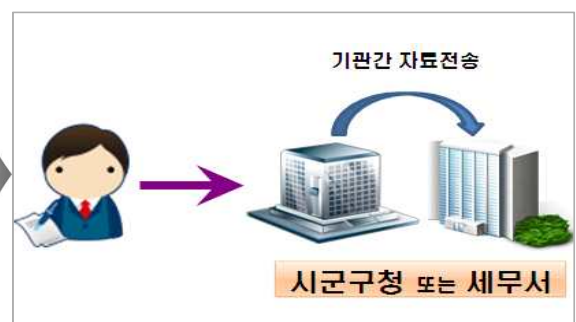
○ (처리 절차)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행정시스템[서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등]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서류를 전달하면 해당 기관에서 소관업무 처리

- * (서울행정시스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통합 행정업무처리 시스템
- * (엔티스) National Tax Integrated System의 약자로,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세 통합 전산망

<통합 폐업신고 도입 전>



<통합 폐업신고 도입 후>



※ <유의사항>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폐업 신고를 일괄 처리(수리)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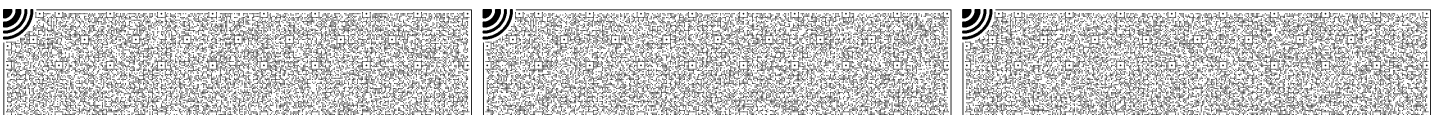
- (세무서 접수)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하면 시·군·구에서 서류 검토 후 폐업 처리
- (시·군·구 접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서류를 세무서로 송부하면 세무서는 서류 검토 후 폐업 처리

○ (대상 업종) 시·군·구 소관 인허가 영업 관련 업종 중 **56개 업종***(세부업종 기준 150개)은 통합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 [별표 3])

* 폐업신고 사무명 기준으로는 56개 업종이며, 이를 세분화 시 총 150개 업종이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으로 지정·운영(붙임 2 참조)

<별표 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소관 부처 ¹⁾	계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1	국내직업소개사업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방문
국토교통부	3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방문
기획재정부	2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11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판매업, 동물 병원, 비료생산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방문
보건복지부	7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소독업,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9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영업, 축산물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방문
여성가족부	5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방문



소관 부처 ¹⁾	계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신청 방법
환경부	3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등, 저수조청소업	방문
해양수산부	3	낙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방문
행정안전부	2	옥외광고업, 행정사 업무	방문
합계	56	150개 세부업종	

- (행정시스템 운영 현황) 관할 시·군·구는 서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56개 업종 중 47개 업종에 대한 폐업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사업 등 일부 업종(6개)은 인허가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등이 별도 구축한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처리

【행정시스템 운영 현황】

소관부처	폐업 신고 업종(세부업종)명	시스템명
행정안전부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등 47개 업종	서울행정시스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부동산중개업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보건복지부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
- 다만, 전국에 사업장이 20개에 불과하여 폐업 빈도가 낮은 도서관 업종 중 사립전문도서관 등 일부 업종*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공문 등 수기로 폐업신고 처리
- * 시스템 미이용 업종 : 도서관 업종 중 사립전문도서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업종 중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장사시설업, 기부식품사업자, 수산질병관리원(권익위 실태조사, '26.6월)

1) 2025. 10.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관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원문이 제때 수정되지 않아 원문대로 기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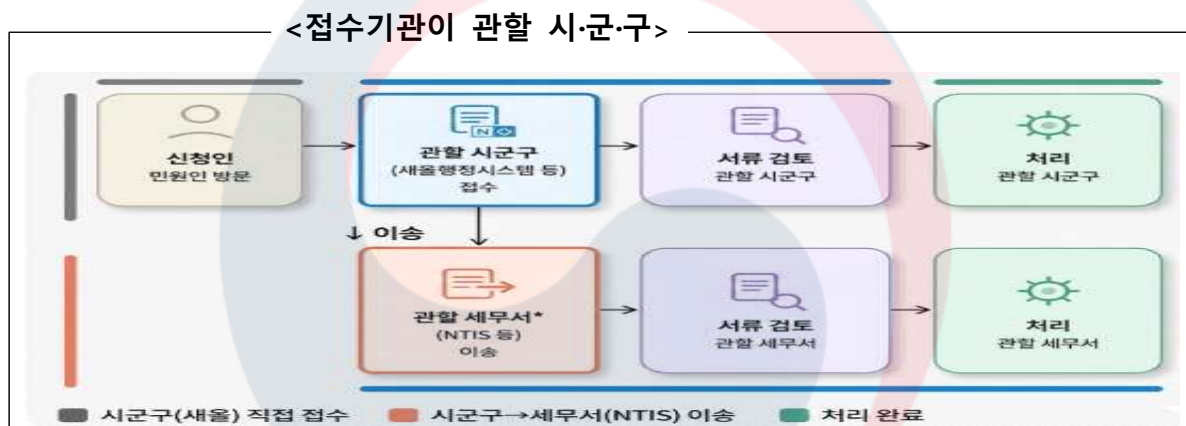


Ⅲ.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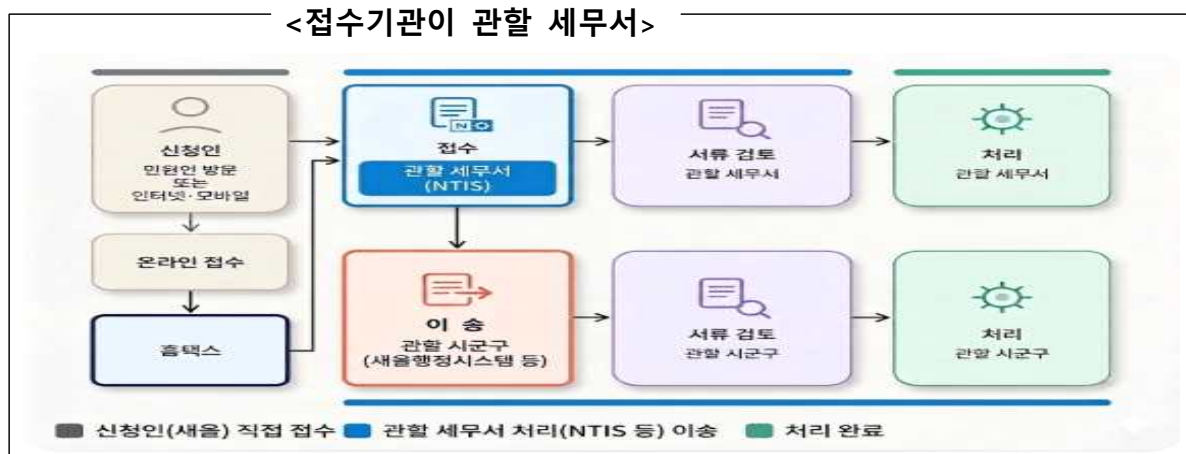
1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 가중

□ 현황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은 통합 폐업신고의 신청 방법을 '방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
 - (접수기관이 시·군·구) 민원인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 필요



- (접수기관이 세무서) 민원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 방문하거나 별도 방문 없이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문제점

- 통합 폐업신고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는 등 이용 편의에 차이 존재
 -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통합 폐업신고의 신청방법이 '방문'으로 되어 있어, 정부24 등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정보시스템 구축'할 의무를 규정
 - 따라서, 민원인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 발생
- 또한,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한 '홈택스'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은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는 문제점 발생
 - 관할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18개 업종*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가 불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초래
 - * **홈택스 이용 불가 업종** :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기부식품사업장, 장사시설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가정폭력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수산질병관리원, 출판사,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부동산중개업(권익위 실태조사, '26.7월)
- 특히, 전국에 2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부담이 더욱 심화

【민원】 <통합 폐업신고 실질적 사용 불가 관련 건의> 신청인은 전국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통합 폐업신고 시스템 등이 미구축되어 있어 어느 곳에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실질적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음 (국민신문고, '26.1월)

2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 연계 미흡에 따른 폐업신고 누락

□ 현황

-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한 관할 기관은 관련 서류를 행정시스템 또는 수동 (공문·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등 대상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

- (전자적 전송) 행정시스템 간(서울행정시스템 등 ⇄ 엔티스) 연계 체계가 구축된 업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

* 56개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 중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된 38개 업종은 서울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

- (수동 전송)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38개 업종 이외의 18개 업종*은 관할 기관 담당 직원이 공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별도의 전송 조치 필요

* 수동 전송 업종(18개)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도서관 가정폭력 상담소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출판사,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사업, 부동산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장사시설업, 기부식품사업자, 수산질병관리원

□ 문제점

- 수동 전송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발생

- 시스템이 연계된 업종은 민원 사항을 행정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나,
- 행정시스템 연계 체계가 미구축된 18개 업종은 담당 직원이 공문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관련 서류를 별도 전송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민원의 접수·처리) ④ 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 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전송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 통합 폐업신고서 전송과정에서 누락 발생 우려

- 수동 전송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통합 폐업신고 관련 서류의 누락 우려가 있고, 이는 민원 발생 원인으로 작용

【민원】 <홈택스에서 통합 폐업신고 완료 후 등록 면허세 독촉장 발송>

- 홈택스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완료하였고 폐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인데도, '26.1.20.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를 통보받음(국민신문고, '26.3월)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에 대해 통합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통신판매업이 유지되어 등록면허세가 납부 고지됨(110콜센터 상담, '26.1월)

○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은 일부 업종은 홈택스 등 포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국민의 온라인 접근성을 저해

※ (행정안전부에 업종 미연결 이유에 대해 문의) 일부 업종이 행정시스템 간에 연계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연계 가능(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4월)

3 통합 폐업신고 진행 이력 확인 곤란

□ 현황

- 새올행정시스템은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진행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문자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안내
- 반면, 엔티스나 다른 행정시스템*은 폐업신고 처리 과정을 통보하는 문자 등 안내 서비스 기능 부재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서울행정시스템 문자 발송 체계(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6. 5월)>



□ 문제점

- 통합 폐업신고 관련 서류 전송 단계에서 문자 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통합 폐업신고 진행 과정에 대해 민원인이 실시간 확인 곤란
- 또한, 인허가 영업 폐업 처리 시 문자를 발송하는 서울행정시스템 조차도 행정시스템 간 서류 전송에 대한 문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행정 처리의 사각지대 발생
- 이에 따라, 통합 폐업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스스로가 개별 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부담이 발생

[민원] <인허가 영업 폐업 문의>

- 신청인은 카페를 운영하다 홈택스에서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은 완료하였으나, □□구청 관할 영업신고증 폐업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가 없음(국민신문고, '26. 2월)
- 어머니가 운영 중이셨던 가게를 ○월 ○일자로 홈택스에서 타 기관에도 폐업신청이 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청'으로 진행하였고, 현재 처리 완료로 조회되는 상황인데, 식품 영업 폐업신고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도 처리된 게 맞는지 궁금(국민신문고, '22. 6월)

4 통합 폐업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현황

- 최근 5년간 통합 폐업신고 이용 건수는 약 8.6만 건으로, 총 폐업 건수 약 145.5만 건 대비 6.0%에 불과하며,
 - 나머지 94.0%(약 136.9만 건)는 인허가 영업 및 사업자등록 폐업을 개별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
 - 특히, 민원인의 직접 방문이 필요한 시·군·구 통한 통합 폐업신고 이용률이 더욱 저조한 상황

【최근 5년간 통합 폐업신고 이용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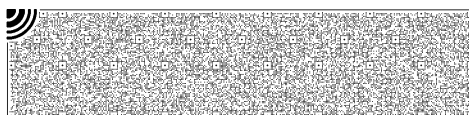
연도	총 폐업 현황(A)	통합 폐업신고					
		합계		시·군·구 ⇒ 세무서		세무서 ⇒ 시·군·구	
		건수(B)	B/A (%)	건수(C)	C/A (%)	건수(D)	D/A (%)
소계	1,455,893	86,734	6.0%	11,368	0.8%	75,366	5.2%
2021년	234,844	11,764	5.0%	2,236	1.0%	9,528	4.1%
2022년	248,825	12,118	4.9%	1,965	0.8%	10,153	4.1%
2023년	305,262	17,265	5.7%	2,629	0.9%	14,636	4.8%
2024년	348,719	23,373	6.7%	2,318	0.7%	21,055	6.0%
2025년	318,243	22,214	7.0%	2,220	0.7%	19,994	6.3%

(출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일부 지방정부(서산시, 진주시 등)의 경우 통합 폐업신고 제도 활성화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등 실시

*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민원상담실 등에 안내문 부착 및 담당자 교육 등

2)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처리한 건수(개별법의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 받은 건수 일부 포함)



<지자체 홍보 사례>



카드 뉴스(서산시)



안내판(남양주시)



리플렛(여주시)



홈페이지 안내(김포시)

-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지방정부 담당 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임을 알려주는 알림창(팝업) 기능을 마련

<알림창(팝업)> 화면



□ 문제점

-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아 폐업사업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의 취지가 퇴색

- 일부 시·군·구가 홍보 활동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인허가 관할 지방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
- 통합 폐업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는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 제고에는 역부족
- 국세청의 엔티스나 법령 소관 부처가 별도로 구축한 행정시스템*에는 관할 담당자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알림창 기능 자체가 부재한 실정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 또한, 알림창 기능이 있는 서울행정시스템도 안경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알림창 기능이 미제공
- 이로 인해, 민원인이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담당 직원이 대상 업종임을 인식조차 못 하는 사례 발생

【사례】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에 대한 인지 부족 >

- 안경업종은 현행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 담당직원의 인식부족으로, 민원인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별도 필요함을 안내. 이후 해당 직원이 안경업도 통합 폐업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안하는 사례 발생(모두의 광장, '25.7월)
- 통합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20분가량 대기 끝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였는데,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한 하나 해본 적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며 구청에서 신청하라는 답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개선 요구(국민신문고, '22.7월)

IV. 개선 방안

1 통합 폐업신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

- 폐업 사업자가 온라인 포털을 통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개정 및 포털시스템(정부24, 홈택스) 기능 개선
-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에 반영(행정안전부)

※ 다만, 폐업 빈도가 매우 낮은 등의 사유로 별도의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업종은 제외(도서관 업종 중 사립전문도서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업종 중 관광농원 사업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장사시설업, 기부식품사업자, 수산질병관리원)

<예시>

소관부처	민원 코드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서식
고용 노동부	1490000-0011	국내직업소개사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원본	방문 또는 온라인	별지7호 서식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18	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원본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	별지7호 서식

⇒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 시스템(정부24, 홈택스) 기능 개선(행정안전부, 국세청)

2 행정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 폐업신고 누락 방지

○ 통합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 간(시·군·구 ↔ 국세청) 전자적으로 상호 전송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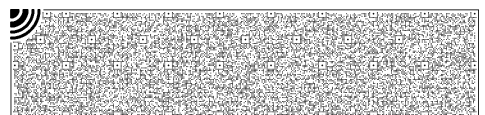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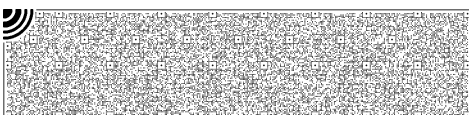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류의 전송 누락·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

⇒ 관할 기관 간 미연계 업종*에 대해 상호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하도록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 다만, 별도 시스템 운영 기관은 권고 취지에 맞게 소관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서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업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중 자율적 추진

<소관 행정시스템별 권고 대상 기관>

▶ 서울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 엔티스(국세청),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국토교통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3 민원인에 대한 알림 기능 대폭 확대

- 폐업 사업자가 통합 폐업신고 관련 서류 전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SMS) 등 알림서비스 제공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 전송 현황에 대한 문자(SMS) 등 안내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접수기관이 관할 세무서인 경우(예시)>

-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한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에 보낼 때
 - 귀하께서 신청한 통합 폐업신고서를 ○○시(관할 시·군·구)에 송부하였습니다.
- 관할 지방정부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
 - 귀하께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신 통합 폐업신고서가 ○○시(담당자 연락처)에 접수되었습니다.

4 인식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홍보·교육 강화

- 관할 기관 담당 직원이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시스템에 통합 폐업신고 관련 알림창 기능 마련

⇒ 소관 행정시스템에 알림창(팝업) 기능 마련(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 통합 폐업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할 지방정부 및 제도 주관부처 간 홍보 협력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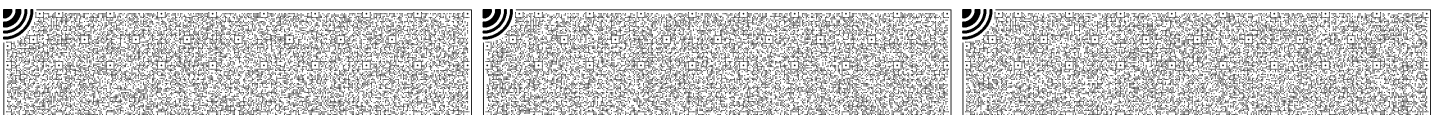
⇒ 시·군·구별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연 1회 이상)하여 부진기관 별도 교육 실시(행정안전부)

⇒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카드 뉴스,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종합민원실 등에 부착하고, 관련 단체·협회에 발송 등 홍보 강화(기초 지방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V. 조치사항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 기한
통합 폐업신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 * 행정시스템 미이용업종은 제외	○ 직접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 가능하도록 관계 법규 개정 ➡ 온라인으로도 통합 폐업신고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개정	행정안전부	2028. 12월
	○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 가능하도록 대국민 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 ➡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 가능하도록 정부24 및 홈택스 기능 개선	행정안전부 국세청	2028 12월
행정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 폐업신고 누락 방지	○ 관할 기관 간(시·군·구 ↔ 국세청) 미연계 업종을 상호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 서울행정시스템, 엔티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기간행물등록시스템 기능 개선 * 다만, 별도 시스템 운영 기관은 권고 취지에 맞게 소관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서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업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중 자율적 추진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028. 12월
민원인에 대한 알림 기능 대폭 확대	○ 통합 폐업신고서 등 관련 서류 전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 제공 ➡ 전송 현황에 대한 문자(SMS) 등 안내서비스 제공		
인식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홍보교육 강화	○ 관할 기관 담당 직원이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통합 폐업신고 관련 알림서비스 제공 ➡ 소관 행정시스템에 알림창(팝업) 기능 마련		2026. 12월
	○ 시·군·구별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연 1회 이상)하여 부진기관 별도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2026. 12월
	○ 카드 뉴스,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종합 민원실 등에 부착, 관련 단체·협회에 발송 등 홍보 강화	기초 지방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1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접수·처리·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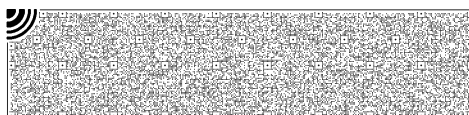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정부포털(정부24, www.gov.kr)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접수기관"이라 함은 민원문서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허가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등)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
 2. 별표 2 : 별표 1의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법인을 이용하는 민원
 3. 별표 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4. 별표 4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으로 처리기관이 시·도인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민원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에 대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로 본다.

제4조(접수기관) ① 별표 1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 가. 시·도, 시·군·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 다. 정부합동민원센터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 가.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 ②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
2. 관할 세무서

④ 별표 4의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관

1. 전국 시·군·구
2. 정부합동민원센터

제8조(민원의 접수·처리) ① 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겹표지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별표 4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처리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처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별표 1 또는 별표 4의 민원 중 접수기관이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즉시 교부할 수 있는 민원문서는 별표 5의 처리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처리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발급하여 별표 5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유기한민원(인·허가민원 등)일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교부기관은 처리기관이 민원문서를 전송하였을 때에는 그 민원문서에 별표 6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3항제2호의 기관이 별표 3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제4조제3항제1호의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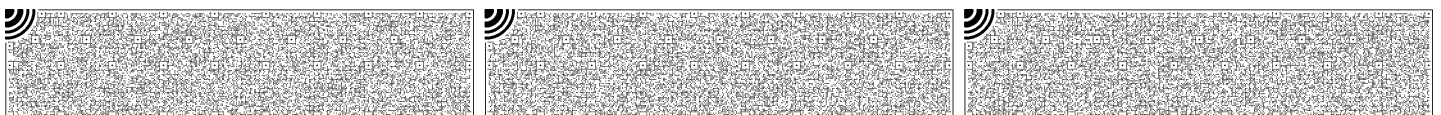
⑪ 접수·교부기관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와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전송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 처리·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처리·교부한 기관은 각각 접수·처리·교부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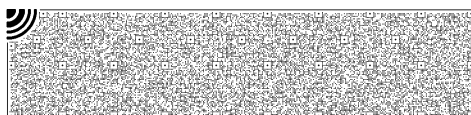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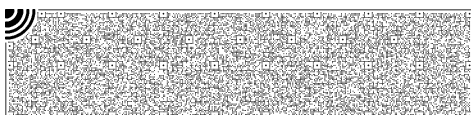
④ 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붙임 2

통합 폐업신고 대상 민원의 종류

연번	소관부처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1	고용노동부	국내직업소개사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2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3		전화권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4		방문판매신고업	▸ 방문판매신고업
5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6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7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 담배소매업
8		담배판매업	▸ 담배도매업
9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상인
10		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업
11		가축인공수정소	▸ 가축인공수정소
12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13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14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15		동물병원	▸ 동물병원
16		비료생산업	▸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17		부화업	▸ 부화업
18		정액 등 처리업	▸ 정액 등 처리업
19		종축업	▸ 종축업
20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21		기부식품사업자	▸ 기부식품 제공사업
22		소독업	▸ 소독업
23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24		장사시설업	▸ 장례식장
2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26		게임제작관련업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27		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28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29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연번	소관부처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30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잡지외 간행물사업
31		체육시설업	▸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 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32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사업	▸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33		석탄가공업	▸ 석탄가공업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5		식품관련영업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용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36		의료기기영업	▸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의료기기 수리업
37		축산물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8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9	여성가족부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40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4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42		성폭력상담소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43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44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45	해양수산부	낙시어선업	▸ 낙시터업, 낙시어선업
46		수산질병관리원	▸ 수산질병관리원
47		허가어업	▸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48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업
49	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	▸ 행정사
50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 출판사
51		인쇄사	▸ 인쇄사
52	보건복지부	안경업소	▸ 안경업소
53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소
54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55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56	환경부	저수조청소업	▸ 저수조청소업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8월 24일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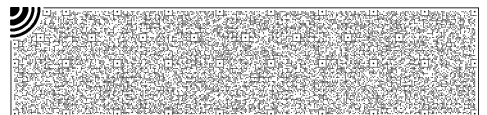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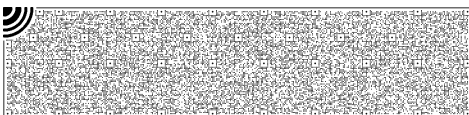
위 원 김 바 울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정 본 입 니 다 .

2026. 8. 24.

국 민 권 의 위 원

